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서울특별시회

수 신 정회원사 각위

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2251, ’26.10.29 / 강득구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2391, ’26.11. 3)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맞춰 2026.11.12(목)까지 회신(FAX : 02-3284-060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- 건산법 일부개정(안) [의안번호 2222251(’ 26.10.29_조인철 의원)]
  ㅇ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건설사업자 개인 진단 허용
  * 기존의 경우, 경영지도사 2인을 상시 고용한 진단기관만 진단가능 (안 제49조제2항)
- 건산법 일부개정(안) [의안번호 2222391(’ 26.11. 3_강득구 의원)]
 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(안 제29조의3제1항)
- 시행령 개정(안)
  ㅇ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·지급·수령에 관한 사항 추가(제26조의8제1항)

붙임 1. 국토교통부 공문 1부.
2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(안) 1부.
3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각 1부.
4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***붙임문서는 seoul.kosca.or.kr 공문/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***

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
회 장 김 홍 수

담당자 팀원 송한빈 선임 강경수 팀장 최봉철
시행 전건협 서울 제1238호 (2026.11.10)
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9층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 / http://seoul.kosca.or.kr
전화 02-3284-0623, 0622 전송 02-3284-0602 / 전자우편 hbsong@kosca.or.kr